

「가스보일러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이용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부장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해당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내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고압가스공급배관에 대해서는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 9월 30일 공포하였다.

현재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전체 도시가스사고 중 29%를 차지하나 사망자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반면 가스보일러 시공자 상당수가 소규모로 영업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시공장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문제가 있었다.

가스보일러 시공대수가 연간 130만대에 이르고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우수 시공자에 대한 보험할인 등의 혜택부여를 통해 동 제도를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시행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이와 별도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고압가스배관에 대해서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설은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판단, 현재 1년마다 시행중인 정기검사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 '94. 12월 한국가스공사 아현동 가스공급시설 사고시 사망 12명 부상 101명 및 건물 145동, 차량 93대가 파손, 보상액은 190억원 소요

첨단장비를 이용한 동 진단을 통해 가스공급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향후 수도권 등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고압가스배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전체 도시가스사고 중 29%를 차지하나 사망자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반면 가스보일러 시공자 상당수가 소규모로 영업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시공장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에 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문제가 있었다.

가스보일러 시공대수가 연간 130만대에 이르고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우수 시공자에 대한 보험할인 등의 혜택부여를 통해 동 제도를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시행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 6886호)되어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정밀안전진단은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도록 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나.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대상에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를 추가함(제64조제2항 신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1995년 11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하여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③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에 배관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을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8의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제27조의3제2항관련)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진단분야	진단항목
가. 기계분야	가스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배관파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나. 전기·계장분야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유지관리상태
다. 그 밖의 분야	라인마크·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2. 제1호의 진단항목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1제1호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17의2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3억원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 및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	---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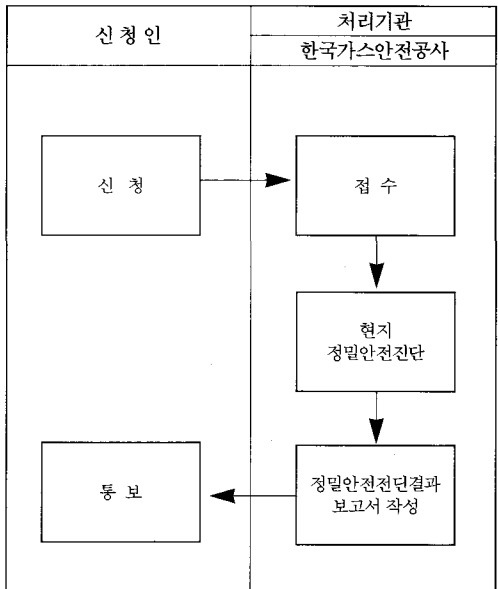
[별지 제24호의1서식] (앞쪽)

정밀안전진단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⑧ 사업소소재지		
⑨ 진단을 받고자 하는 범위		
⑩ 진단희망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범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첨부서류: 배관도면	수수료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1서식]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4년도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5년도

- 3.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6년도
- 4.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7년도

- ③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온수 보일러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분대비표

현행

제5조(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도시가스사업이 사업계획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 2. ~7. (생략)
- < 신 설 >

개정

제5조(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 삭제 >

2. ~7.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1995년 11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 신 설 >

제64조(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사요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 신 설 >

② (생략)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한다)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하여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미 그 이후에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에 배관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에 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